장성군의회 공고 제2019-12호

장성군의회 장학회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

「장성군의회 장학회 규칙」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「지방자치법」제66조의2 및「장성군의회 회의 규칙」제20조의5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9년 4월 24일

장 성 군 의 회 의 장

1. 조례명 : 장성군의회 장학회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

2. 제안이유

○ 호적법 폐지('08.1.1.)에 따른 호적법 상 용어를 삭제하고 가족관계등록법 상의 용어로 정비하고, 모호한 표현을 명확히 표기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○ 제1조(설립목적) '본적'을 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등록기준지 '로 정정

○ 제6조(장학금의 지급) 제1항 '금원'을 '금액'으로, 제2항 '장성군 출신으로'을 '장성군에 등록기준지나 주소를 두고'로 바꿈

4. 관계법령

○ 관계법령 : 「장성군의회 장학회 규칙」

5. 공고기간

○ 공고기간 : 2019. 4. 24. ~ 2019. 4. 28.(5일간)

○ 공고장소 : 장성군의회 홈페이지 게시판(공지사항)

6. 조례안 : 붙임

7. 의견 제출

○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28일 18:00(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)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장성군의회의장(참조 의회사무과장)에게 방문, 우편 및 팩스를 통하여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○ 성명, 주소, 연락처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

○ 기타 사항은 장성군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※ 우 57219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 의회사무과

- 받는 사람 : 장성군의회의장(참조 의회사무과장)
- 전화 061)390-7504, 팩스 061)390-7595

장성군 조례 제 호

장성군의회 장학회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

장성군의회 장학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본 회는 장성군에 등록기준지나 주소를 둔 군민을 대상으로 장학사업을 시행하고 학술연구활동을 지원하여 훌륭한 인재를 발굴, 양상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6조 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제5조에 규정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구수혜자에게 제공하는 금액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.

②제1항의 장학금은 장성군에 등록기준지나 주소를 두고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자로서, 회원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에게 지급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장성군의회 장학회 규칙

제1조(설립목적) 본 회는 장성군에 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등록기준지나 주소를 둔 군민을 대상으로 장학사업을 시행하고 학술연구활동을 지원하여 훌륭한 인재를 발굴,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명칭) 본 회는 장성군의회장학회라 한다.

제3조(구성) 본 회는 장성군의회의원으로 구성한다.

제4조(사무소의 소재지) 본 회의 사무소는 장성군의회 내에 둔다.

제5조(사업)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회는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장학기금의 모금 및 지급
2. 각종 학술연구활동의 지원

제6조(장학금의 지급) ①제5조에 규정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구수혜자에게 제공하는 금액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.

②제1항의 장학금은 장성군에 등록기준지나 주소를 두고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자로서, 회원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에게 지급한다.

1. 가정형편이 곤란하여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자
2. 소년소녀가장으로 재학 중인 자
3. 학업성적이 탁월한 자

제 2 장 기금의 관리

제7조(기금의 조성) ①본 회의 기금은 장성군의회의원의 출연금 및 기타 모금액으로 한다.

②회원의 출연금 한도액은 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수시 결정한다.

제8조(기금의 관리) 기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회원 과반수의 의결을 얻어 부동산이나 채권 등을 취득하는 등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.

제9조(회계년도) ①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②매 회계연도 초에는 예산을 편성하며 연도말에는 장학기금의 결산을 수행하여야 한다.

제 3 장 임 원

제10조(임원) 본 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

1. 회 장 : 1인
2. 부회장 : 1인
3. 총 무 : 1인
4. 감 사 : 2인

제11조(임기)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제12조(임원의 선출) ①회장은 장성군의회 의장으로 부회장은 장성군의회 부의장으로 한다.

②총무는 의장이 임명하고 감사는 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로 회장이 임명한다.

제13조(임원의 임무) ①회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본 회를 대표한다.

②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궐위시 본 회를 대표한다.

③총무는 업무 및 기금을 관리한다.

④감사는 당해 회계연도의 기금집행상황 및 회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.

제 4 장 회 의

제14조(회의) ①본회에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둔다.

②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회하고 임시회의는 회원의 의견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수시 개회한다.

제15조(회의의 소집) ①정기회의는 매년 1월중 회장이 소집한다.

②임시회의는 회장의 요구가 있거나 회원 4명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.

제 5 장 보 칙

제16조(각종 대장의 비치) ①총무는 회의록과 기금관리 대장 및 장학금 지급 대장

을 비치 관리하고 성실하게 기록하여야 한다.

제17조(규칙의 변경) 본 회의 규칙은 회원 2/3이상의 의결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.

제18조(기타)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회통념에 준해서 처리한다.

제19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08.12.31 규칙 제1065호)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설립목적) 본 회는 장성군에 본적이나 주소를 둔 군민을 대상으로 장학사업을 시행하고 학술연구활동을 지원하여 훌륭한 인재를 발굴,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 (설립목적) ---------- 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등록기준지나 ----------
제6조(장학금의 지급) ①제5조에 규정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구수혜자에게 제공하는 금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.	제6조(장학금의 지급) ①---------- ----------금액 ----------
②제1항의 장학금은 장성군 출신으로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자로서, 회원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에게 지급한다.	②---------- 장성군에 등록기준지나 주소를 두고 ----------